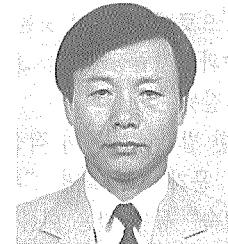


특허출원 절차



황 의 창
특허청 부이사관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그 보호 대상인 발명·신안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출원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을 하여야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지난호의 특허제도에 이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고안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절차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출 원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을 구비하여 소정의 출원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며 출원을 하면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 받는다. 출원서류 등의 작성요령을 살펴본다.

가. 특허출원서의 작성

(1) 특허출원서의 기재사항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서식 1 생략)

①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②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대리인이 있는 경우)

③제출 년월일

④발명의 명칭

⑤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⑥특허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 한 사항(법 제54조 제3항 및 제55조 제2항)

(2) 특허출원서에 첨부 서류

특허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특허명세서

②도면(필요한 경우)

③요약서(기술정보로 사용하기 위함)

④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⑤우선권 주장서류

(3) 특허명세서의 기재사항

특허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발명의 명칭

②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을 첨부한 경우)

③발명의 상세한 설명

④특허청구 범위

나. 첨부서류의 작성

(1) 특허명세서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발명명칭에서부터 특허청구범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서 i) 발명의 명칭, ii) 도면의 간단한 설명, i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iv) 특허청 구범위의 순으로 기재한다.(별첨서식 2 생략)

①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분류·정리·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고주파 가열장치의 전극”으로 하여야 할 것을 단순히 “고주파 가열장치”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 예를들면 “황의창”, “송경숙”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이거나 발명, 고안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이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 아니라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방면의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것이 특정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여지는데 불과한 때에는 “온도제어장치”라고 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특허출원서에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제1도는 평면도, 제2도는 입면도, 제3도는 단면도와 같이 기재하고 도면의 주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호의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어느 부분을 보인 정면도,

제3도는 어느 부분의 종단면도 등(도면의 수는 제한이 없음)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

호의 설명

15 : 스프링, 28 : 치자, 31 : 손잡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명의 목적

발명의 목적에는 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과 산업상의 이용분야 등을 종래의 기술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을 개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래의 기술에 관한 문현이 있는 때에는 되도록이면 그 문현의 명을 기재한다.

⑤ 발명의 구성

발명의 구성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강구했는가를 그 작용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수단에는 발명 구성상의 필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시상태나 실시예를 기재할 수 있다.

⑥ 발명의 효과

발명의 효과는 그 발명에 의하여 생긴 특유의 효과를 말하며 종래의 발명기술에 비하여 기계의 성능이나 사용의 편의성 등의 면에서 유익한 점이나 유효한 점이 무엇인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

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i)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하며, ii) 명확하고 간결하게, iii)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도면

특허출원에 있어서 도면은 필요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별첨서식 3 생략)

도면을 어느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출원인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도면은 주로 화학물질 조성물과 같은 물질발명이나 분석방법 등과 같은 방법발명보다는 기계·기구·장치·시설과 같은 물건의 발명의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도면이 꼭 필요한 발명인데도 불구하고 도면을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수리사유에 해당된다.

(3) 요약서

요약서는 발명의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한 것으로서 기술정보와 서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이다. 요약서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해결방법의 요지, 그 발명의 용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별첨서식 4 생략)

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잘 요약 표현한 도면으로서 요약서에 게재 할 하나의 도면(이하 “선택도”라 한다)의 번호

를 “제○도”와 같이 기재하거나 새로이 작성한 선택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요약서에서는 발명의 이해에 필요한 때에는 선택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선택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에 인용부호를 붙인다.

만약 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방식위반을 이유로 보정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불수리사유 까지는 되지 않는다.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능과 그 기재방법

(1) 의의

특허청구범위라 함은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범위, 즉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와같은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에 있어 적정을 기 할 필요가 있다.

(2)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특허청구범위의 기능은 보호범

위적 기능과 구성 요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전자는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3)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방법

청구요건만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제외하고 발명의 구성상 필요구성요건만을 기재하되 가급적 특허청구범위를 넓게 잡는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독립항)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①독립항

독립항은 단일의 발명으로서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추출하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 특허를 구성하는 항을 말한다.

이와같은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종속항

i)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ii)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독립항의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v)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v)또한 독립항이나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독립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vi)또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를 붙여야 한다.

계속되는 다음호에서는 특허충원절차중 출원요건,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우선권 주장제도에 관하여 게재한다.